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강화 등 >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34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의 반납 대상 구체화 등	4
2.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강화 등	11
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전문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	21
※ 참고자료	29
1. 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29

I. 제안경위

2024년 9월 6일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차량 점검·정비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일부가 장치 부착 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성능 유지확인을 받아도 보증기간(3년) 내에 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 수시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운행차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장관이 수행

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말소시 반납해야 하는 저공해엔진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8조 제5항).

나.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차종별로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단축 함(안 제60조의2제4항).

다.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제2항 및 3항, 제92조제10호의2).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5, 제

60조의6 및 제91조).

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특정경유자동차는 3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하던 것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합검사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밀검사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제3호).

바. 운행차의 수시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제11호의2).

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3항제10호의3).

아. 제60조의2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4항제5호의2).

Ⅲ. 검토의견

1.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의 반납 대상 구체화 등

개정안은 ①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개조·교체된 저공해엔진의 반납 대상(장치·부품)을 환경부령으로 구체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②수시점검에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5항제2호 및 제92조제11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④ (생략)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 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 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 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⑤ ----- ----- ----- ----- ----- ----- ----- -----.

현행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조 또는 교체된 <u>저공해엔진</u> ⑥ ~ ⑯ (생략)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1. (생략) <u><신설></u> 12. ~ 14. (생략)	----- ----- -----. 1. (현행과 같음) 2. -----<u>저공해엔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및 부품</u> ⑥ ~ ⑯ (현행과 같음) 제92조(벌칙) ----- ----- -----. 1. ~ 11. (현행과 같음) <u>11의2.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12. ~ 14. (현행과 같음)

첫째, 현행법 제58조¹⁾에서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하여

1)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①저공해자동차·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제58조제1항제1호), ②배출가스저감장치²⁾의 부착 또는 교체(제58조제1항제2호), ③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제58조제1항제3호) 등의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제58조제5항³⁾에 따르면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차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

-
-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 라. (생략)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경우 ①저감하는 오염물질(입자상물질(PM) 또는 질소산화물(NOx)), ②저감효율(제1~3종), ③부착·교체* 여부에 따라 PM-NOx 동시저감(제1종, DPF+SCR), PM저감(제1종, DPF), PM저감(2종, pDPF), PM저감(제3종, DOC),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TWC) 5가지 종류로 구분됨.
 * 부착용 : 제작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대상(노후 경유차 등)
 교체용 : 제작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 대상(휘발유·LPG차 등)
- 3)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삭제 <2020. 12. 29.>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는 경우 저공해조치된 장치 또는 해당 장치의 잔존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반납 대상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예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DPF, PM-NOx)	자동차 LPG엔진	건설기계 경유엔진
		

자료: 환경부

참고로, 현재 반납되는 장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위탁으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 및 재활용·매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납 받은 장치의 경우 재사용·재활용하거나 매각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있음⁴⁾.

그런데 무게가 가벼워 운송·탈거 비용이 매각잔존가치보다 낮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는 달리, 경유·LPG엔진의 경우 고중량으로 인하여 오히려 반납 절차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4)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반납 장치별 잔존가치·반납 비용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저감장치 (DPF)	건설기계 경유엔진	LPG 엔진		비고
				전체	촉매	
매각 잔존가치(A)		16.5 (1종 복합소형)	6.6 (D488엔진)	18.9~20.7 (L4KB엔진)	13.6~15.4	▶(경유-LPG엔진) 고철 가격 ▶(DPF·촉매) 백금·로듐 등 귀금속
반납 비용 (B)	운송비	0.8~1.6	5~25	5~25	0.6~1.2	▶엔진, 저감장치, 촉매 크기 차이 고려 ▶운송 차량 및 거리 비례(인천·부산 기준)
	탈거비	1.9	10~15	10~15	1.9	▶차량에서 장치 탈거에 드는 비용
	보관비 (임대료)	0.05	1	1	0.05	▶엔진-저감장치-촉매 크기 차이에 따른 보관 물량 차이
차액(A-B)		+12.95~ +13.75	△34.4~ △9.4	△22.1~ +4.7	+10.45~ +12.85	-
결과		→ 반납 유리	→ ~~매각~~ 반납 유리	→ 촉매만 반납 유리		-

자료: 환경부

이에 개정안 제58조제5항은 고중량·다부품으로 구성된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잔존가치와 반납 비용을 비교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부품만을 별도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운송비 절감 등을 통해 저공해조치된 장치의 반납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⁵⁾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나

- 5) 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수시점검에서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법⁶⁾에서는 10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운행정지 명령⁷⁾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운행정지 명령의 경우 생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닌 경우 단기간(10일 이내) 운행을 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고, 운행정지 기간 이후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개선하지 아니하고도 이전과 동일하게 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본래 취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차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⑤ (생략)

6) 법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규칙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참고자료 1) 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

인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아니함.

이에 개정안은 수시점검에서 적발된 운행차의 소유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개선명령의 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소음·진동관리법」⁸⁾에서도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개선명령과 사용정지명령에 대하여 각각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8)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 강화 등

개정안은 ①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성능유지 확인 명령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배출가스 정기검사·정밀검사의 면제 기간을 차등화하며, ③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부착 이후 성능유지 주체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u>자동차의</u>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u>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u>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 ----- <u>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조치 자동차”라 한다)의</u> ----- <u>제60조제1항</u> ----- ----- ----- ----- ----- ----- ----- ----- -----

현행	개정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u>3년간</u>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 설>	----- -----. ② 시·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성능유지 확인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④ ----- ----- ----- -----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간, 성능유지 확인 검사 명령, 원상복구 명령 등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④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	⑥ <u>저공해조치</u>----- ----- ----- ----- -----. ⑦ ----- -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 ----- ----- 등 ----- ----- -----. ⑧ ----- -- 제조 또는 수입하러----- ----- ----- ----- ----- ----- ----- ----- ----- ----- -----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

현행	개정안
사)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2. (생략)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③ ~ ⑥ (생략)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u><신설></u> 11. ~ 14.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 5. (생략)	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가 면제되는 특정경유자동차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2조(벌칙)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 14.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의2.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6. ~ 9. (생략) ⑤·⑥ (생략)	5의2. 제6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u>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u> 6. ~ 9.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첫째, 현행법 제60조의2⁹⁾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로 해당 장치의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면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되어 저공해조치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¹⁰⁾이 있었음.

9) 법 제60조의2(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 ⑥ (생략)

10)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원 지적사항('20.9)

이에 개정안은 ①저공해조치 이후 성능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시·도지사가 성능유지 확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0조의2제2항), ②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0조의2제3항), ③배출가스 정기검사·정밀검사의 면제기간을 일괄 3년에서 최대 2년으로 차종별 검사 주기¹¹⁾를 하위법령에서 차등화하려는 것(안 제60조의2제4항)으로, 저공해조치 제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저공해조치 제도 사후관리 강화 방안]

대상	현행	개정안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① 성능유지 확인 명령(안 제60조의2제2항 신설)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안 제94조제4항제5호의2 신설)
	-	② 성능유지 확인명령(①) 미이행시 탈거조치 등 원상복구 명령(안 제60조의2제3항 신설) 300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92조제10호의2 신설)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 단축	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u>3년간</u>	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u>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u> (안 제60조의2제4항)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대상 구체화	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이후 <u>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종합검사가 면제되는</u> 특정경유자동차(안 제63조제2항제3호)

- ▶ 부차 초기 성능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성능확보 방안 마련
 - DPF 부차 차량의 27.9%는 성능검사 미수검으로 확인
- ▶ 성능검사 적합 판정 차량도 보증기간(3년) 동안 성능유지 여부 검사방안 마련
 - 성능검사 적합 차량의 29%는 보증기간 내 성능검사 기준(매연 10% 이하) 미달

11) 차종별 배출가스 검사 주기

- (비사업용) 승용 2년, 승합(소형) 1년, 화물(중·대형) 6개월
- (사업용) 승용 1년, 승합(소형) 1년, 화물(중·대형) 6개월

다만, 개정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¹²⁾를 한 자동차’를 ‘저공해조치 자동차’로 약칭하고 있는데, 최근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 신설¹³⁾과 더불어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건설기계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저공해조치’로 약칭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63조¹⁴⁾에서는 대기관리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역¹⁵⁾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

12) **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량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13)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9125호, 2022.12.27.일부개정, 2023.6.28..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4) **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대기관리권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도록 하고, ①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와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6)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 준수 검사를 받거나 ③저공해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 경유자동차¹⁷⁾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저공해조치 이후에도 운행 중에 장치의 성능 저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저공해조치 유무를 기준으로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여 주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정밀검사 면제 대상을 현행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1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1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내’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종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¹⁸⁾’로 규정함으로써 단순히 저공해 조치를 한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저공해조치 이후 성능 확인·적합판정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저공해조치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보증기간 (시행규칙 [별표 6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가.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

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km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km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km	

2.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구분	저감효율기준	보증기간	측정방법
가스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해당 자동차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3년 또는 8만km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경유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일부 발췌

- 1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8조(특정경유자동차 검사의 면제) ① 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을 말한다.
- ②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2.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셋째, 현행법 제60조의2제6항¹⁹⁾에 따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2023.8.16. 일부개정, 2024.2.17. 시행) 제60조²⁰⁾에서 미인증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국내 유통을 수입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저감장치 인증의 주체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개정함에 따라 개정안 제60조의2제8항(종전의 제6항)에서는 부착 이후 성능점검의 주체 또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인증과 성능점검의 주체를 일치시켜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19) 법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 법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 전문기관 지정·취소 근거 마련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및 벌칙·과태료 부과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 및 제60조의6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

현행	개정안
<신설>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행	개정안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8의5. (생략) <u><신설></u> 9. ~ 13. (생략) ② ~ ⑤ (생략)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13. (생략) 제9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의2. (생략) <u><신설></u>	----. 1. ~ 8의5. (현행과 같음) <u>8의6. 제60조의5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u>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60조의5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u> 6. ~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0의2. (현행과 같음) <u>10의3.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u>

현행	개정안
11. ~ 16. (생략) ④ ~ ⑥ (생략)	<u>를 대행한 자</u> 11. ~ 1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첫째, 현행법령²¹⁾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 제한장치(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고, 공회전제한장치²²⁾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²³⁾의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에서 인증시험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21) 법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22)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5조(인증시험기관) 시행규칙 제81조의2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행 한다.

23)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4조(인증시험기관) ① 규칙 제8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시험기관(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안전연구원
2. 한국자동차연구원
3. 한국기계연구원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인하대학교
6. 한국석유관리원
7. 한국환경공단(이륜자동차의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정함)
8.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중 원동기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또는 차대동력계 및 그 부속기기 중에 하나 이상을 보유한 자(다른 인증시험기관을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장비 및 그 부속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의 성능을 인증하는 시험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현행 환경부 고시보다 상위 법령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²⁴⁾이 있어,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등의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안 제60조의5), 환경부장관 등이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자료 보고 및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82조제1항제8호의6)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더불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법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①인증시험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안 제60조의6), ②명의 대여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수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안 제91조제5호의2), ③인증시험대행기관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94조제3항제10호의3)으로,

인증기관 지정·운영의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24)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에 따른 정비대상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1.

-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인증기관 사후관리체계 부재로 구체개혁위원회 심의결과 개선 필요

[인증시험기관의 지정·운영 관련 제재 조치(안)]

제재 조치	요건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안 제60조의6)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안 제60조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제2호)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위반(제3호) ·인증시험의 방법·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제4호)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 제91조제5호의2)	명의를 대여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수행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 제94조제3항 제10호의3)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경우

문 의 처

02)6788-5536

※ 참고자료

1. 자동차(개선, 운행정지) 명령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7. 1. 26.>

(앞쪽)

명령서 번호 제 호						
자동차 [] 개선 [] 운행정지 명령서						
소유자	성명(상호) (운전자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명령 사항	자동차번호					차종
	사 유					개선기한 년 월 일까지
	자동차운행 정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점검일시 및 장소		점검일시 년 월 일 시				
		점검장소				
점검 결과	배출가스종류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공기과잉률
	허용기준치	% 이하	% 이하	ppm 이하	ppm 이하	
	측정치	%	%	ppm	ppm	
	배출가스 관련장치 (촉매·조속기 불인파손여부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제1항과 제7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제1항, 제107조제1항에 따라 개선 또는 운행정지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